

#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11.14.

제출자 : 서초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서초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(가칭)는 다자녀, 맞벌이가구 등 방과후 돌봄 수요가 높은 양재권역에 설치, 2018년 12월 개소 예정인 시설로서
- 아동을 위한 교육·문화·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,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- 이에 서초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『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구분	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(가칭)
소재지	서초구 바우피로4길 6 (우면동)
규모	166.27㎡ (50.38평) - 지하1층 : 68.85㎡ (20.86평) - 지상2층 : 97.42㎡ (29.52평)
개소일	'18. 12월 개소예정
비고	우면동 경로당 內 위치

#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##### ○ 위탁근거

- 『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6조 (관리운영의 위탁)

○ 위탁대상 : 아동복지시설(지역아동센터) 1개소

○ 위탁기간 : 2018.12. ~ 2023.11. ※5년

○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○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### ○ 위탁업무

- 시설운영 · 유지 · 안전관리
- 프로그램 운영 · 개발 · 홍보
- 이용아동 상담 및 관리
- 그 밖의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

### 3. 참고사항

##### ○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아동복지법 제50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